

“무엇이 궁금한가?”

/ 건축관계법령에 대한 각 지부회원 및 일반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 /
 〈기술부제공〉

(질의 1) : 건축사법 부칙 ('80. 1. 4)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규정의 “건축보조사”가 80. 4. 1 일 이후부터 “건축사보”로 인정되어 같은법 제23조 제 1 항[시행령 제23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서 등록 활용할 수 있을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23조 제 2 항[시행령 제23조 제 2 항]의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록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보(건축기사 1. 2급 소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되는바 귀부의 지침여부? (기술부)

(답변 1) : 질의에 대하여는 귀견이 타당합니다. (건설부)

(질의 2) : 회원 설계사무소의 광고를(방송, 신문, 팜프렛, 안내문등)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충북지부)

(답변 2) :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 신문, 방송, 출판물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설계사무소에 대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 ① 타인에 대한 중상, 비방등의 행위
- ② 사실무근한 과대 선전 행위
- ③ 윤리규약 제13조에 관련한 행위
- ④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

타인과의 이해관계를 전혀 배제하고 건축사의 품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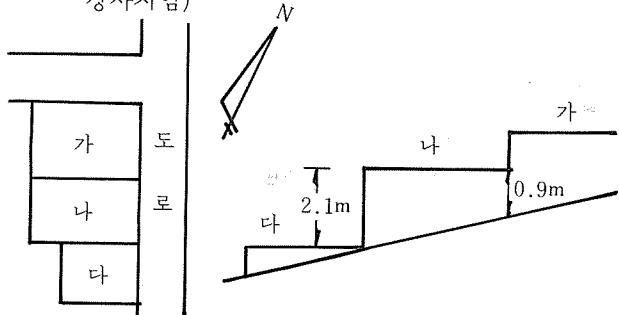
(질의 3) :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 1 항 제 1 호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150m^2$)의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컨데 삼천포시의 현재인구가 약 6만명 정도인바 위 규정의 적용여부와 이율러 시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로서 지목이 전 혹은 담일경우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필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온바 귀 견여부? (기술부)

(답변 3) : 건축법 시행령 제159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이 가능한 것이며, 동규정은 도시형태 및 시가지 규모등 당해구역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농지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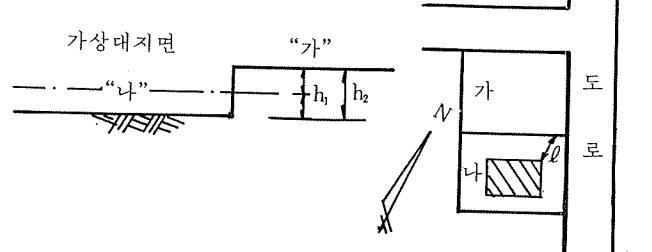
(질의 4) : 그림과 같은 상태의 대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나” 대지의 지표면은 어느지점이 기준면이 되는지 귀견여부? (일반인)

(단, 주거지역이며 원래대지는 측면도로와 같은 경사지임)



(답변 4) : ①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거지역내에서의 인접대지와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 높이를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 이므로 “나” 대지의 지표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5 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가” 대지와 “나” 대지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그림 1)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하며,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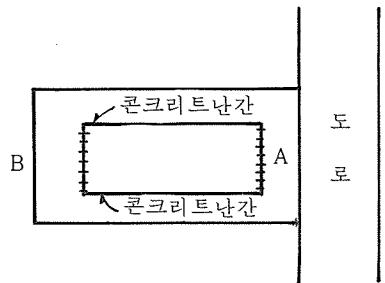


(그림 2)

②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림 2에 표시한 거리 (l)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부)

(질의 5) : 도로에 인접한 대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도로에 면한 부분의 옥상에 그림과 같은 난간(A.B 부분은 철제 파이프 난간으로서 당해 부분면적의 1/2이상이 공간임)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쪽에 의한 건축물의 사선제한(높이제한) 대상에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

견여부? (부산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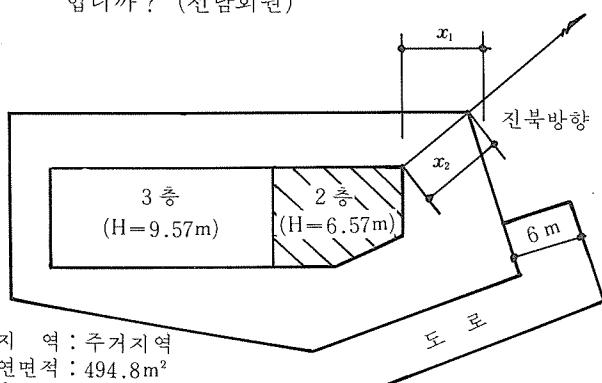


(질의 7) : 그림과 같은 대지 (A)의 경우 건축법 제41조(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적용함에 있어, 전면 20m 도로에 의한 법적용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나 하나의 대지 (B)가 점유하고 있는 지번 (C)의 대문과 담장이 구축된 현황이 도로가 아닌, 지적도상의 폭 3m 사도를 적용하여 사선제한을 받아서 높이 4.5m이상의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는데 대한 귀경 여부? (부산회원)

(답변 5) : 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림의 C,D 부분의 난간벽은 각각 그 벽면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어야 이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과 상관관계에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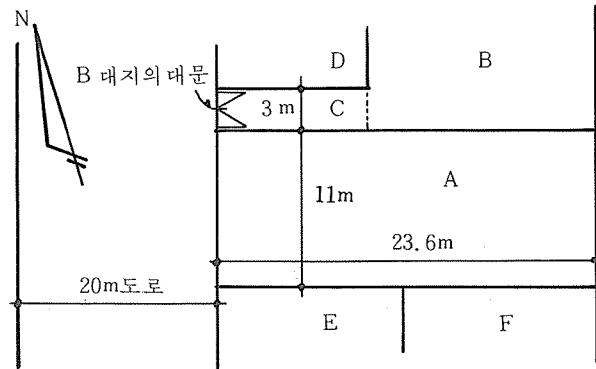
② 건축법 제41조 제1항의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에 있어서 도시한 A 부분의 난간(그 벽면의 1/2이상 공간)은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A가 벽면일 경우 C,D 부분은 A에 대한 대린벽의 개념으로서 각각의 벽면으로 간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부)

(질의 6) :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의 관련사항으로 그림과 같은 경우 x_1 , x_2 의 이격거리는 얼마 확보하여야 합니까? (전남회원)



(답변 6) : ①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림의 2층 증축부분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그림의 x_2 의 거리는 1.65m이상)로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같은법 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를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2층부분의 북서측 방향에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는 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부)



(답변 7) : ①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나.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완화의 경우 등 특수한 조건하에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바,

② A의 대지는 같은법 제2조 제15호 “도로”의 정의에서(사도법 제2조 및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도로서 적용을 받는 도로포함) 막다른 도로(2개이상 대지에 이용되는 통과도로가 아닌 도로) 일 경우로서 위 “나”에 의한 높이제한의 완화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③ 따라서 A 대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 3m(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이상, 35m미만)에 연접한 대지로서 대지와 막다른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므로 위 “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가 산정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기술부)

(질의 8) : 건축사가 개업을 하지 아니하고 (휴업회원, 비회원 등) 영업이 아닌 자기 개인 점포 및 주택을 설계하고 또 건축허가 절차 이행과 감리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8) : 건축사가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허가 절차 이행 등이 가능합니다. (기술부)